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9.

발 의 자 : 강명구 · 김태호 · 고동진
김형동 · 이종배 · 서지영
박준태 · 엄태영 · 임종득
김기현 · 권영진 · 김장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이스피싱,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.

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,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,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음.

이에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,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1호 등).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2호(종전의 제11호) 중 “제10호”를 “제11호”로 한다.

11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51조(제347조 또는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 및 제352조(제347조 또는 제347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의 죄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의2의 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특정중대 범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 1. ~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1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조</u> <u>의2, 제351조(제347조 또는</u> <u>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</u> <u>한다) 및 제352조(제347조 또</u> <u>는 제347조의2의 미수범만 해</u> <u>당한다)의 죄와 「전기통신금</u> <u>용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</u> <u>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</u> <u>의2의 죄</u>
<u>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</u>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	<u>12. -----제11호-----</u> ----- -----